

## 공정위, '97년 10월 OECD경쟁정책위원회 참가

OECD경쟁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硬性카르텔 금지 권고(안)과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기업합병전 신고양식에 관한 모델 개발, 철도분야 규제 개혁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회원국간의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OECD 사무국 측이 제시한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에 대해 회원국간에 대체적인 의견 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 논의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동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

동 회의에서는 경성카르텔 금지를 위한 OECD 차원의 국제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96년 10월 회의에서 처음으로 논의가 제기되었던 경성카르텔 금지 권고(안)이 지난 '97년 2월 및 6월 회의를 통해 수렴된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OECD 사무국 측에 의해 제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동 권고(안)은 경성카르텔을 가격고정, 생산제한, 시장 분할, 입찰담합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정의하고 각국이 경성카르텔을 효과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재조치를 갖추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각국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적용제의 사항들은 동 권고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대신 투명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동 권고 채택 후 새로이 채택되는 적용제의

사항들은 사무국에 통보토록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동 권고(안)은 각국간에 경성카르텔의 조사 협력을 위해 양자간 협정을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경성카르텔 조사에 필요한 정보교환등의 협력을 추진하되 비밀정보를 요청할 경우 비밀보호장치를 두도록 하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수정된 경성카르텔 조사협력 원칙으로서 회원국은 자국법과 규정 및 중요한 이익에 반하지 않는 한 당연히 협조하여야 하지만 상대국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이 자국의 중요한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협조요청을 거부할 권한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협조에 조건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 권고(안)은 '98년 2월 OECD 경쟁정책위원회 회의를 거쳐 '98년 5월 OECD 각료회의에서 정식권고로 채택되어 효력이 발생되고 그 후 회원국간 양자협정을 거쳐 구체적인 절차규정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동 권고에서는 카르텔의 적용제의 사항들이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요구하고 있고 적용제의 사항들의 필요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동 권고가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각국간의 적용제의 사항의 비교 등을 통해 적용제의 축소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나라의 경우 각종 개별법에 근거한 적용제의 사항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인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경성 카르텔 권고가 채택될 경우 이를 근거로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경성카르텔 조사협력을 위한 양자간 협정체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우리 나라의 기업들이 외국시장에서 경험한 경성카르텔로 인한 시장접근 저해 등의 사례를 발굴하여 경성카르텔 관련 양자협정 논의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경성카르텔 조사에 있어서 회원국간의 국제적인 공조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므로 기업활동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투명성의 확보가 더욱 요청된다.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또한 동 회의에서는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상충문제 등에 관한 논의 결과 지적재산권의 권리 자체는 경쟁법으로도 보호되어야 하나, 정당한 권리 행사의 한계를 일탈한 경우 경쟁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회원국간에 의견이 일치

했다. 또한 각국의 예로 볼 때, 정당한 행사의 한계 일탈에 관한 판단은 특허당국보다는 경쟁당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지적재산권 남용 여부 판단 등에 있어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구체적 유형별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의 처리지침(guideline)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합병전 신고양식에 대한 모델 개발**

지난 '97년 6월 회의부터 시작된 기업합병전 신고양식에 관한 모델 개발에 대한 논의는, 국가간의 상이한 신고양식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업합병 신고대상, 신고시기,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단 등은 각국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비교적 수렴도가 용이한 신고양식에 대해서 OECD 차원의 모델을 개발하자는 데 동 작업의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 양식에 대해 회원국간에 많은 이견이 노출됨에 따라 동 양식의 개발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부문 규제개혁방안**

또한 동 회의에서는 공공서비스제공의무(PSO:Public Service Obligation) 등의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독점으로 운영되어 오

던 철도분야에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동 분야의 경쟁도입 필요성과 효율적인 경쟁도입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최근 운송부문경쟁(Intermodal Competition) 심화로 인해 철도분야에 있어서도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경쟁법 적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철도분야 경쟁도입방안으로 각국 대표단은 시설과 경영의 분리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철도분야에 있어 시설, 운영, 사후보수 등 세 가지 영역 중 운영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체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OECD에서 경쟁카르텔 금지권고(안)의 채택을 계기로 OECD에서의 경쟁정책수검화(경쟁라운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최근의 OECD 논의는 전통적으로 경쟁법이 적용 제외되는 영역에도 경쟁법 적용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 추세이므로 국내적으로 경쟁법 적용 확대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98년 중 실시될 금융서비스 분야('98. 2월 회의)와 의료보험 서비스분야('98. 6월 회의) 등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우리 나라의 입장을 정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토 · 막 · 상 · 식

OECD경쟁정책위원회

OECD 26개 전문위원회의 하나로서, 회원국간의 경쟁정책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 운영됨. 1961년 제한적 거래관행에 대한 전문가위원회로서 출발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와서 국제간 무역장벽의 해소와 함께 국내의 경쟁정책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기업활동의 세계화가 가속화되어감에 따라 1987년, RBP 전문가위원회를 경쟁정책위원회로 격상시키면서 경쟁정책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강화하고 있음. 현 단계에서는 OECD가 경쟁정책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중심무대가 되고 있으며, 향후 WTO 차원에서 경쟁정책 논의도 OECD 논의를 바탕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슈는 수평협정, 수직협정, 국제기업합병, 반덤핑조치 남용에 대한 규제 강화, 규제분야에 경쟁법의 적용 확대, 국제적 경쟁법 위반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협력장치 마련, 지적 재산권 남용행위 규제 등임.